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잡한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세부 기준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대상 선정기준에 사업장 규모를 반영하여 감독대상 선정과 관련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도급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를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등 직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감독 대상이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세부기준은 정책방향에 따라 시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나.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에 따라 정기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반영되도록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함.(안 제10조제1항2호)

다. 정기감독 대상 선정기준의 재해건수 산정시점은 요양결정일 기준 임을 명확하게 명시함.(안 제10조제1항2호)

라. 업무추진지침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시 실시하는 감독을 기획감독에 포함.(안 10조제3항2호)

마.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감독대상이 도급인 및 수급인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 개정안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을 “감독”으로, “호와 같다”를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관은 매년 감독에 대한 업무추진지침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계획(이하 "업무추진지침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업장 감독대상)”을 “(감독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현장
4.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최초 판정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 유 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5.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장
7. 기타 안전·보건관리실패 불량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또는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추진지침등에 정하거나 지방관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제10조제2항 중 “업추진지침”을 “업추진지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추진지침”을 “업추진지침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제12조의 제목 “(사업장감독의 범위)”를 “(감독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예방감독,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기획감독에 대해”를 “정기감독, 예방감독, 기획감독에 대해”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지방관서장은 분기 1회 이상”을 “지방관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감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질병 의심 등 1개월 이내에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가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 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시정지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로,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독관은 시정기한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을 “감독관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독관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 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시정지시는 제16조제3항을”을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정할”을 “정한”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 재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의 종류: 정가기획·특별감독>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소 재 지 :

○ 점검일자 20 .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확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된 경우만 해당)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노사 미참여 또는 날인거부 사유

1. 건설현장 개요

현황		(전화: -)				
건설업체명				현장명		
소재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착공후 재해자수	총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주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책	성명	선임일자	자격	비고
보건관리자						
협업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도급사업 안전보건 점검(2월 1회 이상)			

2.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고
개착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터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발파작업 안전조치		
거푸집 및 집동바리 안전조치		
기타 붕괴예방 조치		

3.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사전조사줄파기 시공시 보호조치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 시 안전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5.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감 전 재 해 예 방 조 치		

6.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 크레인, 곤도라, 동근톱 등)		
가설기자재 인 증품('09.1.1 제품 검정품) 사용여부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 유지, 지지방법 준수 등 성능 확인 및 작업 계획서, 추락 방지조치 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계 기구 위험예방 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7.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침수예방 조치		
기타 예방조치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8.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 건강보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9.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향타기 또는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공사 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 관리비	계상된 안전 관리비	실행 안전 관리비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p>○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 자</th> <th>항 목</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목적외 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p>	일 자	항 목	금 액			
일 자	항 목	금 액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실시여부	<p>○</p> <p>※ 기술지도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1. 안전보건교육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12. 근로자의 보건관리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시 부착/교육 여부		

13. 보건상의 조치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 기타 보건상의 조치	

14. 기타(2~11호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등>

○

※ 감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

안전보건 감독 등 실적보고(반기 누계분)

1. 처리내용별

구분	대상 업체	실시 업체	미실시 업체	위반 업체	처 리 결 과														
					행 정 처 리										사 법 처 리				
					소계	경고 등	시 정	사용중지	작업중지		안전 진단	보건 진단	종합 진단	개선 계획	과태료		소계	구속	불구속
개소	개소(건)	개소(건)	개소(건/대)	개소(건)	개소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금액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단 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건)	개소(건)	개소(건/대)	개소(건)	개소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금액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계						()	()	(/)	()		()	()	()	()			()	()	()
사업장 · 점검	소 계					()	()	(/)	()		()	()	()	()			()	()	()
	1) 정기감독					()	()	(/)	()		()	()	()	()			()	()	()
	2) 예방감독					()	()	(/)	()		()	()	()	()			()	()	()
	3) 기획감독					()	()	(/)	()		()	()	()	()			()	()	()
	4) 특별감독					()	()	(/)	()		()	()	()	()			()	()	()
	5) 점검					()	()	(/)	()		()	()	()	()			()	()	()
사 건 처 리	소 계					()	()	(/)	()		()	()	()	()			()	()	()
	1) 중대재해 조사					()	()	(/)	()		()	()	()	()			()	()	()
	2) 일반재해 조사					()	()	(/)	()		()	()	()	()			()	()	()
	3) 신고사건					()	()	(/)	()		()	()	()	()			()	()	()
기타조사					()	()	(/)	()		()	()	()	()			()	()	()	
기타업무					()	()	(/)	()		()	()	()	()			()	()	()	
지정기관 점검					()	()	(/)	()		()	()	()	()			()	()	()	

- ※ 1. 하반기 보고서에는 상반기 실적에 누계하여 기재
 2. “사건처리”의 “대상업체”란에는 조사대상 재해만을 기재하고 “사법처리”란의 ()에는 법인을 포함한 사법처리(범죄인지보고)된 인원수를 기재
 3. “감독” 또는 “사건처리”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모두 기재
 4. 1개 사업장 또는 1건의 재해조사에 대해 처리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복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위반업체수보다 행정·사법처리 업체수가 많을 수 있음)
 5. “기타조사”란에는 건강진단, 작업환경 미 실시 조사 등의 처리결과를 기재
 6. “기타업무”란에는 감독 및 사건처리, 기타조사를 제외한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의 처리결과를 기재
 7. “지정기관 점검”란은 대형기관, 검진·측정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규칙 별표 20)의 점검 등과 처리결과(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시정지시, 기타로 구분)를 기재

2. 위반내용별

(단위 : 건)

구분	총계	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예방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서류의 보존	기타	가중 처벌				
					소계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도급 사업	유해작업 금지	안전 관리비	안전 보건교육	방호 조치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안전 검사	자율 검사 프로그램	유해 화학 물질	기타	소계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기타								
계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	소 계																													
	1) 정기감독																													
	2) 예방감독																													
	3) 기획감독																													
	4) 특별감독																													
5) 점검																														
사건처리	소 계																													
	1) 중대재해조사																													
	2) 일반재해조사																													
3) 신고사건																														
기타조사																														
기타업무																														
지정기관 점검																														

※ 각 위반내용별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

1.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2. 유해위험예방조치: 안전조치(제23조), 보건조치(제24조), 도급사업(제29조, 제29조의2), 유해작업 금지(제28조), 안전 관리비(제30조), 안전 보건교육(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방호조치(제33조), 안전인증(제34조, 제34조의2~5), 자율안전 확인(제35조, 제35조의2~4), 안전검사(제36조), 자율검사프로그램(제36조의2~4), 유해 화학물질(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5,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기타(제25조, 제26조)
3. 근로자 보건 관리: 작업환경측정(제42조), 건강진단(제43조), 기타(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4. 감독과 명령: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5. 서류의 보존: 제64조
6. 기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47조, 제52조의6, 제63조

26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3.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의한 화학적 인자 및 분진에 한한다)가 2회 이상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 분진(광업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최초 요양결

다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현장

4.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최초 판정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

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와 직업병 유소견자(최초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표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이 1.0(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5, 10,000명 이상 사업장은 2.0으로 한다) 이상인 사업장.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표> 직업병 또는 유소견자 가중치 및 계산식

유해인자별	가중치		계산식 $\sum(\text{유해인자별 직업병자수 또는 유소견자수} \times \text{가중치})$
	직업병자	유소견자	
화학적 인자	1	0.5	
분진	0.5	0.25	

주의 1. 유해인자별 직업병자 또는 유소견자의 수는 최초 발생 또는 발견자만 적용
 2. 당해 연도에 동일 근로자가 직업병자 및 유소견자 판정을 모두 받은 때에는 직업병자로만 계산
 3.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이환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직업병자 또는 유소견자는 제외 가능

5.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공정 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등급(M±)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다만, 같은 기간 동안에 M-등급에서 M+ 등급으로 등급이 높아진 사업장과 전년도 말까지 3년간 동일 사유로 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5.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6.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다만, 이 조에 따른 감독 시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7.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 경우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본다(이하 같다).

8.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으로 발표한 재해통계를 사용하되, 전년도 재해통계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재해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사업장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장

7. 기타 안전·보건관리실태 불량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또는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 등에 정하거나 지방관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삭 제>

9.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부상(3일이상의 휴업재해에 한정한다)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삭 제>

10. 안전·보건관리 실태불량 사업장, 재해다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감독실시를 지시하거나 업무추진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장

<삭 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지방관서장이 감독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삭 제>

가. 최근 1년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감전, 폭발·과열, 화재, 깔림·뒤집힘, 화학물질누출·접촉, 산소결핍 등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로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과

태료 부과 또는 사법조치가 행
해진 사건이 2회 이상인 사업
장

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라.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감독 실시가 필요한 사업장

② 예방감독은 제10조제1항에 의
한 감독대상 사업장 중 업무추진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
주가 지방관서에 예방감독 신청
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작성하
여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③ (생략)

1.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등 산
업재해 통계의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업무추진지침에서 정하는
기인물, 유해·위험작업을 보유하
고 있는 사업장

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
방관서에 시달한 사업장

② -----
----- 업
무추진지침-----

-----.

③ (현행과 같음)

1. -----

----- 업무추진지침-----

2. 업무추진지침이 확정된 이
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
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

④ (생략)

제12조(사업장감독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예방감독,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기획감독에 대해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 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임검지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업장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감독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감독, 예방감독, 기획감독에 대해-----

----- 지방관서장은 -----

----- 제10조제1항

제1호-----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감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질병 의심 등 1개월 이내에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

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가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 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생략)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생략)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는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 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

-----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감독관은 시정기한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

⑤ 감독관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 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0월 2
6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
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
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